

일본PL제도의 운영과 발전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교육홍모부 이사 나경수

(02) 579-3291 ksrha@esak.or.kr

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배경

1) 원고의 입증책임의 한계

명치시대에 제정된 민법의 불법행위의 책임조항인 제709조에 기초하여 과실책임으로 처리하여 왔던 것이 제정 전까지의 법적 현실이었다. 민법 제709조는 고의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이는 피해자 구제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었다. 또한 사법판단에 있어서 원고의 입증책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책임규명의 한계를 완화내지 극복하기 위하여 고의나 과실의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여 결함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입증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필요를 통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법적 성격의 입법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2)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

1990년대의 산업계는 많은 변화와 격동을 경험하게 된다. 먼저, 국제적으로 시장개방의 압력과 함께 규제 완화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계 스스로 자기 규제를 통한 자기강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자국의 제조업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외국

제조업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규제완화 측면에서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여부는 제품안전성의 격차를 발생시켜 미제정의 상태에서는 자국민의 피해가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제정의 움직임이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선진국가와의 조화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의 결정적 제정동기는 1985년에 제정된 EC지침에 큰 영향을 받았다. 엄격책임을 채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이 무과실책임원칙을 도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경향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만이 과실책임을 고집하는 것은 국제적인 법질서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며 소비자를 담보로 하여 그 피해로 인하여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국제적인 여론과 비판이 비등하고 있었다.

2.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과의 관계

1) 상관관계

근대민법의 지도원리의 하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책임주의이다. 이는 일명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고의나 과실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개인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침해 받지 않고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 왔다. 민법은 이 원칙을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중에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꾸준히 공헌한 과실책임주의는 오늘날 대기업의 생성과 진전에 수반하여 새로운 사태에 당면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결함을 노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같은 과실책임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무과실책임의 이론이다. 과실책임주의가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특히 공장이나 광산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재해대책으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즉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유해한 폐수나 가스가 방출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면 무과실이 된다. 그러므로, 결국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결과가 과연 타당할까 하는 점이다. 경영주는 그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도, 자기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무과실이란 이유하나만으로 어떤 책임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책임을 돌려놓고 종래의 과실책임주의는 결국 단점을 드러내어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무과실책임론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학설은 구구하다.

보상책임설에 의하면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도 있다'는 견해에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책임설에 의하면, 위험을 수반하는 시설이나 공장 등 또한 이와 관련된 경영자는 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어느 견해에 의하여든지간에, 요컨대 과실책임의 완화와 무과실책임의 승인을 뜻하는데서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은 민법의 새로운 해석이나 아니면 특별입법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즉 민법상 감독자나 사용자에 책임이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그들에게 전환시켜 무과실의 입증을 곤란케 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실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또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에서도 무과실책임에 흡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2) 무과실책임주의의 태동

어떠한 과실 없이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의이다. 근대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은 대기업의 발달과 첨단 IT 산업의 발전 그리고 고속교통기관의 등장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이론적 근거는 사회적 손해에 대한 공평부담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각종 대기업은 자기들의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사회에 는 여기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위험과 손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손해에 대하여 비록 구체적인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도 있다'는 원리하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회적인 공평의 원칙에도 합치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상책임론이다.

또한 위험한 시설이나 설비를 소유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당연히 그 시설이나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위험책임론이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제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최근에는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면서도 거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실제로 무과실책임주의에 바짝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완전한 무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공작물소유자의 책임과 광업권자의 광해배상 책임이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제조물책임 (PL)법 등이 있다.

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경위와 요지

1) 제정경위

(1) 1950년대

1950년대의 모리나카 밀크의 비소중독사건 등 대형 식품과 의약품에 의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심각히 제기되었다. 그래서 2가지의 규제법 제정이 있었다. 첫째로 경구 섭취에 의한 직접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법인데, 식품위생법, 약사법, 농약규제법이 그것이다. 둘째로 위험성이 큰 제품에 대한 규제법으로서 독극물규제법과 고압가스규제법이었다.

(2) 1960년대 ~ 1980년대 초

다양한 제품의 공급에 의한 제품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규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행정력에 의한 사전 규제의 목적과 업계의 자발적인 안전 규제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게 되었다. 후반기의 제품에 의한 피해사고의 유형은 재산상의 확대손해보다 신체와 생명에 관한 건강피해가 오히려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조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법원의 판결

이 증가하였다.

(3) 1980년대 후반에서 입법까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논의의 배경으로서는 소비자 단체의 주장과 소비자문제가 결국 기업활동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연방법 제정의 작업이 진행되고 유럽에서는 EC지침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경제의 국제화 협력 무드는 동등한 경쟁조건을 요구하고 안전성을 기준으로한 국제적 적합성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여기에 국가간의 무역마찰을 계기로 하여 1980년대에 진행된 규제완화는 사전적 행정규제를 대신하여 제조물책임이라는 사후의 사법 규제의 정비와 확충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제조물 책임의 출발점인 '제13차 국민생활 심의회 최종보고서'는 '종합적인 소비자피해방지과 구제의 방향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현실화가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즉 기업의 고충창구 등, 피해자의 구제 및 분쟁처리의 제도나 그 실태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를 시사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이 사회적 습속과 특성에 적합하게끔 소비자피해의 신속하고도 충분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행위자 행위의 과실이 아닌 제조물의 주로 안전성과 내구성을 문제로 하는 결함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산업계에서의 필요성과 국민경제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산업계로부터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 관계되는 각각의 성이나 청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후 1993년 12월 '제14차 국민생활심의회보고서'에서는 '제조물책임제도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소비

자피해방지와 구제의 방향에 대하여"를 각 성과 청의 보고를 받아 종합분석하여 집대성하였다. 여기서 '제14차 국민생활심의회보고회'의 요지는 결함있는 제품에 의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원칙으로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실책임이 아닌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보고서는 제13차 심의회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었던 '제조물책임도입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관하여 검토하고 파급될 영향은 그리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예측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소액피해 등에 관한 법원의 분쟁처리의 방향, 제품사고와 관련한 원인규명기관의 설립방향,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방향 등에 대하여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신속하게, 공정성있게 그리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관련 업계에 의한 민간기관의 활용을 기대하는 외에 소비자생활센터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의 충실화를 제언하였다.

1994년 6월 국회에서 정립한 '제조물책임법'은 1993년 12월에서 1994년 4월 사이에 당시 호소카와 연립여당내의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즉 'PL법관련 여당 프로젝트'와 관련관청에서 조직한 9개의 성, 청의 연락회의에 의해 구체적인 조문작업을 수행하였다. 그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약간 논란은 있었으나 중의원과 참의원의 부대결의가 부기된 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결정하였다.

2)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1) 책임원칙

제품사고에 의한 책임을 과실이 아닌 결함을 새로운

요건으로 하는 책임으로 하고 제조물, 손해 및 책임주체의 적용요건과 책임의 기간 등의 효과를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정 규정의 명문화와 원인규명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정립된 배상책임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하고 소액피해를 용이하게 구제하기 위한 간이 분쟁처리 절차에 대한 검토가 거론되었다. 이를더면 배상책임을 이행할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업이 임의의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을 권유한다. 그리고 신속한 간이분쟁처리를 위하여서는 각 기업, 업계 및 단체가 PL센터를 설립하여 고충처리센터를 정비하고 소비자와의 상대교섭과 조정 및 화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한다.

(2) 구체적 조문의 해석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1994년 7월 1일 공포되었고 1995년 7월 1일 시행되었는데, 전부 본문 6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었다.

일본 제조물책임법의 개괄적인 특징은 제조물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의 제조물의 정의의 규정에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외의 상품은 부동산, 전기, 소프트웨어, 열, 자기, 방사선 등의 무체물 및 미가공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폐기물은 일단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결함의 판단요소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4차 국민생활심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6요소와 9항목으로 결함의 판단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 6요소

- 제품의 효용과 유용성
- 가격대비한 제품의 효과

- 기술적 실현 가능성
- 피해발생의 개연성과 그 정도
- 사용자에게 의한 손해발생의 방지 가능성
- 제품의 통상 사용기간과 내구연한

☆ 9항목

- 제조물의 표시
- 제조물의 효용과 유용성
- 가격과 대비한 제품의 효과
- 피해발생의 개연성과 그 정도
- 제품의 통상 사용기간과 내구기간
- 제조물의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사용법
- 제조물의 사용자에게 의한 손해발생방지의 가능성
- 제조물의 인도시기
- 기술적 실현 가능성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제조물의 인도시기인데 한편PL법에서는 공급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의 PL법에서는 이 법률이 시행 후에 그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제조물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본의 PL법은 판매업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는 기존의 민법의 계약책임을 준용하여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대부분의 조문은 한국의 조문과 근사하며 이러한 특성은 각 성과 청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 소비자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편향적인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기업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체널을 구축하고 이를 활발히 가동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행 후 충돌이나 커다란 대과없이 7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4. 책임

책임(責任)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임무나 의무로 이해하지만 법률 특히 형법적 견지에서 책임(Schuld)이란 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형법상 이러한 책임문제는 행위의 위법성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제기되는 문제이다. 형법상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거와 본질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책임주의

책임주의(責任主義)란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는 원리를 기초로 책임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책임의 대소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책임의 범위 내로 형벌권을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입증책임(立證責任)이란 거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이라고도 한다. 소송상 어떤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법률적 계판을 받을 당사자의 위험 또는 불이익이다.

2) 사실상의 추정

사실상(事實上)의 추정(推定)이란 간접사실로부터 직접사실을 추인(推認)하는 것을 말한다. 추인의 여부는 자유심증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추인(推認)하여야만 된다는 것은 다르다. 이점에서 법률상의 추정과는 다르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도 경험법칙에 따

르는 관계상 추인하지 않으면 경험법칙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추인의 결과 직접사실에 있어서의 거증의 부담은 전환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법률상의 추정과는 다르다. 사실상의 추정이운데 고도의 경험법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을 일응(一應)의 추정이라 한다.

3) 집단소송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은 일찍부터 영미법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달하여 왔고 1966년 개정된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23조에 명문화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군(class) 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class에 속하는 총원의 청구금액을 일괄하여 제소하고 일거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이다.

소송의 태양(態樣) 자체는 우리나라의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송과 유사한 바 있으나 선정당사자는 개별적인 수권이 있어야 비로소 그 권리이익에 관하여 소송을 하게 되지만 class action에서는 스스로 나서서 대표자가 전체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한 class에 속하는 member의 제외신청이 없으면 당연히 수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대표자가 class의 member의 권리를 그 소송에서 일괄하여 청구하여 대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일괄하여 배상을 받아 class의 member에 분배하는 방식이 있고 경우에 따라 공통의 쟁점, 예컨대 원

인에 대한 유책성(有責性)에 대하여 class 전원에 효력이 미치는 판례를 받아 내는데 그치고 이를 바탕으로 class의 member가 상대방에 각자의 배상금액을 증명하여 각자 배상청구하는 방식이 있다.

5. 일본 제조물책임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률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결함'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당해 제조물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제조업자' 등은 다음의 기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이하 제조업자라고 한다)
2. 스스로 당해 제조업자라고 당해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의 표시(이하 성명 등의 표시라고 한다)를 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에 제조업자로 오인시키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3. 전호에 기재한 자 이외, 당해 제조업자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관련 형태 기타 사정에서

를 때 당해 제조물에 그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제3조 (제조물책임) 제조업자 등은 그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전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제조물에 있어서 그 인도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는 그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면책사유) 전조의 경우, 제조업자 등은 다음의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때는 동조에서 규정한 배상책임이 없다.

1. 당해 제조물을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때의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식에 의하여 당해 제조물에 그 결함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2.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 결함이 오로지 당해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의 설계에 관한 지시를 따름으로 발생하고 동시에 그 결함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

제5조 (기간의 제한) ① 제3조에 규정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외무자를 알고 있었던 때부터 3년동안 행사하지 않은 때는 시효로 소멸한다.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이와 같다.

② 전항 후단의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신체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발견되

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제6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민법(1986년 법률 제89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기일 등)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률의 시행 후 그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1961년 법률 제14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 및 선박의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1975년 법률 제94호)』을 『선박의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1975년 법률 제94호) 및 제조물책임법(1994년 법률 제...호』로 개정한다.

6. 제정후의 변천

1) 업종별 단체의 지원

PL법의 제정 후부터 시행전까지의 유예기간중 상당수의 각 업종별 단체는 자체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를 위하여 제품안전(PS)에 관한 안내지침서(guidelines)뿐만 아니라 클레임에 대응할 매뉴얼(manuals)을 작성하여 준비하였다. 그래서 분쟁의 사전예방(PLP) 및 사후방어(PLD)의 측면까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업종별 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형 법원의 분쟁해결기관(ADR)을 창설하여 기업의 상대 교섭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의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소비자의식의 고취를 야기시키며 현행의 재판제로서는 개별적 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수 피해의 구제에는 그 한계가 노정되었다. 그래서 재판실무의 관점에서 이러한 민사소송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리의 충실과 축진을 목표로 해서 조정되었다. 그리하여 변론점 화해방식, 집중증거조사, 법원서기의 적극적 협조 및 활동 등의 법원 중심의 대안과 개선의 필요가 발생하였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된新民사소송법의 특징은 소비자본쟁의 중요한 사실관계인 정보나 증거입수의 어려움을 감안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당사자 조 회제도와 문서제출명령을 채용하였다.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변호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 스스로가 재판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상정하였다. 그리고는 본인의 직접소송을 전제로 하여 간이하고 편리한 절차로 또한 법원이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본쟁의 해결제도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채택되지 않았고 그 대신에新民사소송법은 소액소송절차를 창설하였다. 그리하여 소비자본쟁해결이나 일반사민소송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제안

일본은 1995년 7월 1일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이후 7년이 넘게 경과했는데, 그동안의 운용상황을 보면 PL판례에 예상외로 피해자측의 패소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일본 전국 소비자단체 연합회 PL 옴브즈회의는 지난 7월 5일에 'PL법 개정 - 소비자로부터의

제안'이라는 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설명한 후 내각부 국민생활국장과 경제산업성 소비자 경제부장에게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조물개념의 확대, 추정규정의 도입, 피해자 정보 개시(開示 : discovery)청구권 인정, 부가금 도입, 소비자단체소권의 도입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 되어 있는 제조물개념의 규정을 "유체물·무체물을 불문하고 유통에 놓인 모든 동산 및 부동산"으로 수정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농수축산물 등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둘째, 결함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을 신설해 예상되는 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통상 발생할 성질이 아닌 경우에는 결함을 추정하고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셋째, 피해자의 정보개시청구권을 신설하여 제조자 또는 관련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소가 결함을 인정할 수 있다.

넷째, 제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재판소는 영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에 해당하는 손해금 외에 2배(double)한도 내의 부가금의 지불을 명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 단체는 결함있는 제품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송시 피해자와 공동으로 또 대신하여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업자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내부고발자(turn-coat witness)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일곱째, 개발위험(development risk)의 항변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8. 에필로그

제조물책임(PL)법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3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각 국가별 법의 체계, 사회구조와 문화적 분위기 등의 시행여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며 다양한 적용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일먼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제조물책임법리가 비교적 발달된 미국과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우리나라와는 이우에 있으면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우리와 적용상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1994년 4월 12일에 제정되어, 이듬해인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준비성있는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전부터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피해사고 예방에서부터 피해구제 및 각종 제품의 안전대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기 위해 각종 제도나 체계를 보완해 왔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과는 다른 사회제도와 문화적 토양 그리고 법체계에 의해, 법 시행후 급격하게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5년 PL법시행후 현재까지 꾸준히 소송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과 같은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배상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에 시장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이미지의 실추는 물론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홀한 대처는 기업경영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조물책임의 위협과 유사한 위협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제조물책임법은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므로 앞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추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그런데로 몇 가지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분쟁의 해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화해를 통한 제조물책임 분쟁의 해결방식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법 시행이후 2001년 상반기까지의 제조물책임관련 소송건수는 약 160건 정도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고처리가 조용히 처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화해와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물책임법의 본격 시행이전에 일본은 행정주도형 분쟁조정기관(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acilities) 및 민간주도형 분쟁조정기관이 이미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기관의 중재로 인한 상당수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고들이 지리하고 시끄러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용히 해결된 것이다.

행정주도형 분쟁조정기관이란 고충처리와 피해구제 위원회와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총리실에 해당하는 내각부 산하의 국민생활센터 및 각 지방의 450여 개소나 되는 생활센터에 법계, 학계, 업계, 시험검사기관 소비자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 및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민간주도형은 PL 상담센터나 심사조정위원회 형태로 되어있으며, 가전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업종별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에 PL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자사번호사와 대기업에서 파견된 기술직을 상주시켜 피해신고내용의 상담과 화해의 알선을 우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화해가 실패하게 되면, 심사조정소위원회와 같은 비상설 전문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하여 분쟁조정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심사조정소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이 이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일본의 특징은 역시 일본다운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일본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기 전에 이미 분쟁해결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제조물의 결함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소와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이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여 소송 및 조정애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각종 홍보활동과 제품안전성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자금용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일괄적인 PL 배상보험의 운영등을 통해 기업들이 PL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각 기업체들도 제조물책임법 시행이전에 일본형 단계별 조직으로 PL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내교육의 강화를 포함한 전사적인 PL 대응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PL 위원회는 제품의 설계, 생산 구매, 유통등의 각 단계별 안전성검토(safety review)와 내구성측정(endurability forecast)을 수행하고 제조물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고 생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PL법 시행이후 분쟁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제품안전과 사용수칙에 대한 인식은 법 도입후 크게 변화하여 PL센터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상담건수 및 소송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해당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시장에서 그 입지를 급격하게 상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어 제조자는 물론 소비자의 의식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 및 기업체가 어느 정도 차원의 준비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 제조물책임법이 이상적으로 시행되었다. 물론 법 도입후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나 큰 혼란없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소송결과를 볼 때 법 적용의 양상이 미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비자의 강화된 권의보호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향후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법 체계 및 소송의 양상에 있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내 제조물책임법이 일본의 제조물책임법과 성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게 논의되고 제정되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제조물책임법 도입과 시행에 따른 한국정부 및 기업체의 준비상황 역시 주로 일본을 모델로 하여 진행되어 왔으므로, 우리는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역시 미국의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분석하여 그 진행추이를 계속해서 예외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